

## 農業革命과 近代化<sup>(1)</sup>

金宗炫

本稿는 제도적 변혁과 기술적 변혁을 내용으로 하는 農業變化가 어떠한 양태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이 근대화·공업화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영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比較史의으로 고찰한 것이다. 농업제도의 근대적 변화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資本主義의 農業制度(三分制), 프랑스에서는 農民的 所有·小農經營, 그리고 일본에서는 地主-小作制度가 전개되고 그것이 그들 나라의 근대사회의 성격에 일정한 특징을 부여하였다. 한편, 제도적 변혁과 함께 농업기술의 변혁을 통한 農業發展은, 그 양상과 정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토지생산성의 상승과 관련된 기술진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農業發展은 식량·공업원료, 자본 및 노동력 등 요소공급의 확대와 시장확대를 통해서 각국의 초기 工業화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1. 머리말

工業化가 진전됨에 따라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지위는 생산, 고용, 소득 등 모든 면에서 계속 떨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基本的으로 農業이 갖는 經濟的 및 社會的意義의 중요함이 결코 부정되어 온 것은 아니다. 농업이 중요함은 현실적으로는 농업의 지위가 크게 저하한 先進工業諸國에서도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의 工業國인 영국에서는 產業革命 이래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크게 저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農業生產性의 향상을 위한 농업투자는 확대되었고 특히 1870년대의 농업공황 이후에는 차지권의 강화와 소농창출 등 일관해서 농업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오늘날 선진공업국가에서마저 農產物輸入自由化를 둘러싼 국제적 마찰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농업의 중요함을 실제로 알려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의 역할은 특히 工業화 초기에 커다. 그것은 前工業化社會가 경제적으로는 농업중심의 사회였고 그 社會經濟的 基盤이 농촌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工業화가 진전되기 위

(1) 이 글은 제34회 全國歷史學大會(1991년 5월 31일)에서 共同主題 ‘近代社會의 展開過程에 있어서의 農業問題’와 관련하여 필자가 발표한 “近代社會의 展開過程에 있어서의 農業”에 약간 가필한 것이다.

해서는 전통적 농업과 그에 기초를 둔 社會諸關係가 공업화에 적합한 근대적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화의 기본과정이 工業化였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資本主義化的過程이었다고 볼 때 그 속에서의 농업변화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 農業變化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制度的 변혁이고 다른 하나는 技術的 변혁이다. 전자는 전근대적·봉건적 토지소유(보유) 및 농업체제의 近代的·資本主義의in 그것으로의 변화(「農地革命」)이며, 후자는 전근대적·전통적 농법 및 농업기술의 근대적 改良農法으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상승(「農業革命」)이다. 양자를 내용으로 하는 農業革命은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 앞서 수행되었다. 이에 대해서 19세기에 공업화 과정을 거친 제국에서는 영국에서와 같은 농업혁명은 아니었으나 농업은 工業化的進展과 함께 變化하였다.

농지혁명에 의해서 근대적 농업의 제도적 기초가 확립되었다. 근대적 土地所有制度가 확립됨으로써 관습적·공동체적 농업은 합리적·개별적 농업으로 변화하였다. 그것은 社會關係의 중요한 變化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그 속에서 농민층의 분해가 진행되고 농업, 더 나아가 사회관계 일반의 근대화·자본주의화의 조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農地革命은 다른 한편에서 합리적 개량농법이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기도 하였다. 개량농법의 도입에 의한 土地生產性의 상승은 농산물 공급능력을 높혀, 인구증가 특히 工業化·都市化에 따른 비농업인구의 증가를 뒷받침하였다. 이렇게 해서 농업혁명은 국민부양 능력을 높히고 경제적 잉여의 공업에의 流入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업화를 뒷받침한 것이다. 한 나라의 工業化初期(產業革命期)에 농업혁명 또는 농업발전이 식량 및 原料供給, 資本供給, 國內市場의 擴大를 통하여 經濟的으로 중요한 役割을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으로 강조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近代化過程에 있어서의 농업변화의 양태와 그 의의는 나라에 따라 일정한 편차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목되어야 할 것은, 나라에 따라서 農業近代化에 時期的 편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기적 편차는 근대 전기의 유럽제국간에도 있었지만, 특히 영국과 일본 또는 한국과의 사이에는 매우 커으며 그 경우 농업변화의 양태는 국내적 조건과 함께 세계자본주의의 성격 등 국제적 조건에 의해서 크게 규정되었다. 다음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은, 첫째와 깊이 관련되는 것이지만, 개별 국가의 역사적 전통, 전근대적 농업조직의 존재양태라든가 변혁기의 主體的·客觀的 諸條件의 차이에 의해서 농업변화의 양태와 그 사회경제적 의의에도 일정한 편차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농업변화의 양태가 그 나라의 사회근대화에 일정한 특징을 부여하고 經濟

近代化에 대해서도 각각 特徵的인 형태로 기여한 것이었다. 따라서 近代化・工業化와 農業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는 나라에 따른 편차를 충분히 고려에 넣으면서 일반적 인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근대사회 전개과정에 있어서의 農業발전의 양태와 그 역할을 비교사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및 일본이다. 영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工業화에 앞서서 農業革命이 이루어지고 農業의 資本主義的 發展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에서는 農民的 土地所有・小農經營을 특징으로 하는 農業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近代的 土地所有制度의 轉變과정에서 지주에의 토지집중과 지주-소작관계가 진전되었다. 이와 같은 農業변화의 양태가 이들 諸國의 社會經濟의 近代化에 성격적인 특징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 2. 農業制度의 變化와 社會近代化

농업의 제도적 변화는 近代化의 基本過程이었다. 農業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면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토지를 둘러싼 소유 및 생산관계가 사실상 사회관계 일반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農業의 제도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영주-농노적 소유 및 생산관계가 私的・資本主義的 所有 및 生產關係로 변화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봉건 제도의 붕괴과정에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市民革命을 거쳐 완료되었다. 그 변화의 양태는 그 나라의 歷史的 背景, 사회경제적 조건 및 주체적 대응형태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면서 그 나라의 근대사회에 일정한 성격적 특징을 부여하였다.

농업의 制度的 變化를 다른 나라에 앞서서 전형적으로 수행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의 영주-농노제는 15・6세기에는 이미 봉괴하여 지주는 封建領主가 아니라 地代取得者化하고 농노는 사실상의 自由農民이 되었다. 16세기 이후의 商業發展(시장확대), 價格革命, 農촌공업의 발달 및 매뉴팩처의 광범한 전개라는 새로운 경제적 여건의 전개 속에서 農民層 分解가 진전되고 독립자영농민층(요오맨)이 광범하게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農民經濟의 전개에 대한 지주층의 위로부터의 대응형태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인클로우저였다. 법을 어기면서 강제적으로 수행된 16세기의 인클로우저를 통해서 中小農民의 토지는 통합되어 대농, 지주층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그것은 토지의 共同體的 保有・利用制度가 근대적・사적 소유, 資本主義的 利用制度로 이행되는 계기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온 영국에서 近代的 土地所有制度가 확립된 것은 시민혁명

이후였다. 시민혁명에 의해서 상규소유관계에서 존속해 온 기사보유제 및 후견제 등 封建的制度가 폐기됨으로써 지주는 자신의 토지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관습보유농의 토지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은 定期借地農이 되고 그 운명은 점점으로 경제적 여건에 밀려지게 되었다. 이에 농민층의 문제는 더욱 진전되었다.

영국에서 大土地所有制度는 17세기 말에 곤궁한 小土地主의 토지가 대지주에 집중됨으로써 확립되었다. 지주계급에 집중된 토지는 대단위 농장으로 일괄해서 차지농에게 임대되고 후자는 농업노동자를 고용하며 그것을 경영하였다. 그것은 地主—借地農—農業勞動者로 구성되는 농업의 三分制, 즉 資本主義의 농업경영제도의 성립이었다. 16세기의 인클로우저를 거치면서 성립하기 시작한 三分制는 18세기에 확립되고 산업혁명이 전진되는 18세기 후반기에서 19세기 초에 걸쳐서 전진된 의회인클로우저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地主—借地農體制下에서 영국 농업은 改良農法을 도입하고 19세기에는 資本集約的 高度農業을 추진하면서 발전하였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 앞서서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주의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농업에서의 공동체적·전통적·봉건적 제도의 私的·合理的·資本主義的 제도로의 변화는 영국의 사회근대화,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선행조건이었다. 영국은 농업의 近代的 變化 및 발전의 기반 위에서 최초의 產業革命을 수행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大土地所有制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농업이 전개되는 속에서 지주와 차지농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았다. 토지는 수입의 원천이라는 經濟的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社會的 위신의 기반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귀족은 토지귀족이었으며 의회는 지주계급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借地農은 선거권을 획득(1832년)하여 정치에 참여하였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도 19세기 영국에 있어서의 지배적 사회가치는 귀족적·센틀맨적 가치였다. 그 속에서 產業資本家는 산업기업가로서의 독자적 지위와 가치의 계속적 확대를 지향하기보다는 토지를 획득하여 센틀맨이 되리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地主—借地農에 의해서 주도된 영국의 農業革命은 사회근대화와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기본조건이 된 한편 토지귀족·센틀맨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프랑스 농업의 제도적 특징은 지역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農民的 土地所有·小農經營이 있다. 구체제하에서의 세습농민은 영주에게 소액의 화폐지대를 납부하는 사실상의 토지소유자였다. 한편 영주의 대토지는 분할되어 소작농에게 임대되었다. 小作形態는 화폐지대를 원칙으로 하는 定期小作과 현물지대의 分益小作이 있다.

農民層의 分解도 진전되어 특히 북부 프랑스의 선진지역에서는 무농층이 형성되어 있었

다. 그러나 商業的 發展(市場擴大)과 농촌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성장이 크지 못하고 상업적 농업이 전개될 수 있는 經濟的 誘引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유한 농민층이 자신의 경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하였다. 北部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농장경영도 전개되었으나 차지농은 영국의 자본주의적 차지농과는 달리 한편에서 日雇農을 고용하여 농장을 경영하면 서도 地代・公租稅徵收請負人으로서 영주제와 결합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주층은 차지농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지대를 수취하기보다 소작농에 대한 領主的支配를 지향하였다. 한편 世襲農民의 獨立性은 강화되었다. 프랑스 절대주의는 그 재정기반으로서의 농민에 대한 영주권을 제약하고 農民的 所有의 확립을 지향하였다. 강한 농민적 소유와 절대주의 국가의 “相互依存的 關係”(R. Brenner)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경제적 지위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領主權下에서의 농민의 지대와 기타 봉건적 諸負擔 그리고 절대주의 국가에 대한 조세부담으로 구체제 말기의 프랑스 농민은 소득의 60%를 수탈당하였다.

프랑스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는 大革命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대혁명에 의해서 영주권은 완전히 소멸하였다. 농민은 봉건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고 세습지농민은 자신의 토지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다. 교회와 망명귀족의 토지는 몰수되어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몰수된 귀족토지의 일부는 후에 原所有者에게 복귀되었으나 국유토지는 분할, 매각되었다. 국유토지의 구입에는 많은 도시민과 농민이 참가하였다. 그와 함께 많은 日雇勞動者와 職人們도 소토지를 구입 또는 임차하였다. 大革命에 의해서 확립된 農民的 土地所有制度는 국유지의 매각을 통해서 확대되었다. 均等相續制下에서 농민의 토지는 세분화되는 경향에 있었다. 한편 지역에 따라 大土地所有制는 중요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대농장제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19세기 전반기를 통하여 大農場經營은 減少하였다. 대토지도 소작관계를 통해서 소규모로 경영되었다. 프랑스에서의 근대적 토지소유・경영은 農民的 所有・小農經營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獨自的 自率性을 가진 농민혁명”(G. Lefebre)을 거친 프랑스에 있어서 농민의 社會經濟的 獨立性은 강하였다. 농민은 인구증가에 따라 토지를 세분하면서도 토지에 집착하고 농업을 목수하는 강한 保守的 性向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분해는 진전되지 못하고 자본주의적 工業化의 진전은 제약되었다. 사실 19세기를 통하여 프랑스 공업화는 지위에 미물렀다. 19세기 말에도 프랑스 사회의 農村的 성격은 농후하였다.

이와 같은 농촌의 성격은 프랑스 근대사회의 小부르주아적 性格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프랑스 근대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小農民과 도시의 中小生產者에 基盤을 둔 사회였다. 小부르조아사회는 지방적 데두리에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강한 성향을 가진 保守的

性格의 사회였다. 小부르주아는 反資本主義的 性格의 계급이었다. 공업화의 전개에 따라 산업자본가 계급이 성장하였지만 그들의 주도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계급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경제활동의 진흥자 또는 통제자로서 政府의役割은 커다. 프랑스에서는 정비된 행정체계와 관료제도를 가진 中央集權的政治體制가 성립하고 관료의 사회적 위신은 높았다. 정부의 경제성장정책, 즉 산업자본가에 대한 지원정책이 小부르주아에게 압박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저항도 커으며 정부는 小부르주아의 권익을 무시하고 성장정책만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 사회의 資本主義化는 19세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진전되었다.

일본 농업의 제도적 특징은 地主制에 있었다. 토구가와 幕藩體制 후기의 상업적 농업의 전개 속에서 농민분해가 진전되었고 상인자본에 의한 新田開發의 진전과 함께 地主-小作關係는 형성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유통임이 더욱 진전된 것은 메이지政府의 ‘地租改正’(1873~81년)에 의해서였다. 地租改正은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와 함께 근대적 지조체계의 확립과정이었다. 토지소유관계가 확정되고 토지소유자가 地租를 부담하게 되었다. 地租는 金納化되었으나 고율이었다. 한편 소작농의 지대는 고율의 現物地代였다. 지조개정에 의해서 농민은 토지소유권이 인정된 경우에도 高率地租의 부담을 지고 소작농의 경우에는 높은 지대부담이 있었다. 그것은 농민분해가 진전되고 地主制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실제로 농민분해는 1870년대의 후반기와 1880년대의 전반기에 걸친 인플레이션期과 디플레이션期에 크게 진전되고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적 곤란에 의한 地租滯納・負債增大로 토지를 잃고 無產化하는 소농민이 증대하였다. 그것은 地主에의 토지의 집중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영국에서와 같이 농업자본가를 낳는 분해가 아니라 地主-小作關係를 확대하는 분해였다. 지주의 토지는 소규모로 분할되어 소작지로 임대되고 무산농민은 이동하지 않고 소작인이 되었다. 高率現物地代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자본주의적 대경영이 진개될 수 있는 적극적 유인은 없었다. 총경지에 대한 小作地의 비율은 1883년의 34.2%에서 1903년에는 44.5%로 증가하였다.

地主制를 중심으로 한 일본 농촌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舊講座派系의 학자들은 일본의 지주제가 경제외적 강제와 고율현물지대를 기축으로 한 半封建的土地所有이며 그것이 천황제 전대주의의 기반이 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勞農派系의 학자들은 그것이 경제외적 강제가 수반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완전한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 임차계약이다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토지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근래에는 이를 상반된 견해를 비판하면서 봉건적 토지소유와 자본주의적 토지소유의 중간에 위치하는 近代的・中

間的 土地所有(地主制)라는 유형으로 인식하자는 견해(中村哲)도 있다. 이와 같은 견해들을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상반된 견해들이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이 있었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小作農의 法的 및 經濟的 地位가 취약하였다는 것이다.

도시공업의 흡인력이 약하여 無產農民의 가족단위 離村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소작지 확보를 위하여 경쟁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小作權은 취약하고 地代는 高率이 되었다. 농민의 독립성은 약하고 그만큼 농촌의 불안정성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이 농민의 토지와 농업에의 집착을 강화하였다. 그 위에 지주가 위치하였다. 지주제 하에서 농촌의 保守的, 傳統的 性格은 유지되었다. 그것이 일본사회의 전통주의적, 권위주의적 성격의 기반이 되었다.

### 3. 農業發展과 工業化

공업화 초기에 農業은 제도적 변혁과 함께 生產力의 發展을 이루면서 발전하였다. 농업발전의 양상이라든가 발전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토지소유제도, 農業生產組織 및 政府政策에 따라 그것이 소농민과 농업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상응한 개선을 수반하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농업 자체가 발전하였다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었다. 農業生產力의 상승은 기술진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경우 기술진보는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상승보다 土地生產性의 上昇과 관련된 것이었다. 신작물의 도입, 품종개량, 비료사용의 증대 및 19세기 중엽 이후의 화학비료의 사용, 토지개량 등의 기술진보에 의해서 土地生產性이 上昇하고 그 속에서 농업발전이 이루어졌다.

일찍부터 기술적 변혁을 수행하면서 농업의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에는 開放耕地制度下에서도 콩과(豆科) 작물과 재배목초가 도입되고 신곡초식농법(convertible husbandry)이 이용되면서 삼포농법은 변질되고 土地의 利用度와 生産성은 向上되고 있었다. 특히 18세기에는 터널과 클로버를 輪作에 도입한 노포크농법이 확립·보급됨으로써 休閑制가 止揚되어 토지의 이용도와 生產성이 크게 上昇하게 되었다. 화학비료가 이용되기 이전의 단계에 있어서 곡물생산은 가축사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사료작물로서의 터널과 클로버의 輪作에의 도입에 의한 휴한제의 지양과 가축사육 규모의 확대는 비료증가와 결국에는 곡물증산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영국에서 농업개량을 주도한 것은 지주와 차지농이었다. 地主는 地代收入을 높이기 위하여 인클로우저와 농장시

설 설치 등 토지개량을 위한 고정자본의 투자를 한 한편, 借地農은 농업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改良農法을 도입하였다. “지주와 차지농의 파트너쉽”(E.L. Jones)을 통하여 18세기 전반기의 低穀價時代에는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성증대 노력으로 改良農法이 진전되고, 후반기의 高穀價時代에는 인클로우저가 진전되어 耕作地가 창출되면서 곡물생산이 증대하였다. 1815년의 농업불황 이후에는 한계지가 포기되고 우량지에서 자본집약적 고도 농업이 진전됨으로써 생산성향상을 이루하고 穀物法의 撤廢(1846년)에도 불구하고 영국 농업은 번영하였다.

舊體制下의 프랑스 농업은 생산성향상을 이루하지 못하였다. 토지귀족과 부르주아는 지대취득자였고 농장을 자영하려 하지는 않았다. 大地主는 토지개량을 하고 농업경영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려 하기보다는 領主權에 관심이 있었고 영주의 지배와 絶對主義國家의 과도한 과세부과로 곤궁해진 농민에게는 경영학대와 개량농업을 위한 임여가 없었다. 프랑스 농업은 19세기 전반기에도 인클로우저는 진전되지 않고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터널과 클로버 등 사료작물이 재배되면서 휴한지는 점차 감소하였고 감자와 사탕무가 도입되면서 耕地面積은 확대되었다. 프랑스 농업의 생산성 증가는 별로 없었으나 생산은 다양화하고 크게 증가하였다.

프랑스 농업은 19세기 후반기에 工業化의 進展과 철도의 보급에 따른 國內市場의 확대와 貿易成長에 따른 외국시장의 확대에 자극되어 크게 발전하였다. 밀, 포도, 감자, 사탕무 등의 재배면적과 生產量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생산의 증대는 각종 토지개량법의 이용, 화학비료 및 기계이용의 증대의 결과였다. 휴한지는 19세기 말에 거의 소멸하고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진전되었다. 특히 북부 프랑스에서는 1880년 이후 사탕무 재배와 관련하여 資本主義的 大農場經營이 확립되었다. 정부는 각종 보조금의 지급과 1880년 이후에는 보호관세의 도입으로 농업을 진흥·보호하였다.

일본 농업도 발전하였다. 耕地面積도 증가하였지만 그보다도 토지생산성은 더욱 상승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토쿠가와 후기부터 진전되었으나 특히 地租改正 이후 두드러지게 진전되었다. 土地生產性의 增大는 관개, 배수, 경지개간 등의 토지개량과 종자개량, 작물재배방법의 개량, 비료사용의 증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지주는 高率現物地代의 수취, 都市化에 따른 미가상승, 지조부담의 경감에 자극되어 각종 土地改良을 위한 투자를 하였고, 정부는 지주와 함께 토지개량의 노력을 하는 한편, 각종 농사관계 시험장과 학교를 설립·운영함으로써 農業技術의 改良과 普及을 통해서 농업발전을 유도하였다.

그러면 농업발전은 공업화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우리는 그것을 식량·원료,

자본 및 노동력의 供給擴大와 市場(需要擴大)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농업이 발전하는 속에서 食糧 및 原料의 供給은 크게 확대되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전야까지 국산곡물이 국내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수출되었다. 產業革命期에 영국은 곡물수입국이 되었으나 수입의존도는 낮았다. 또한 英國 농업은 면화를 제외한 각종 공업원료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프랑스는 19세기를 통하여 밀을 자급하고 낙농제품, 원예작물, 포도주의 수출국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日本에 있어서도 產業革命期에 식량은 대체적으로 自給하였다. 식량공급을 결정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서였다. 특히 生絲와 茶의 수출은 중요하였다. 식량과 원료의 충분한 공급은 그들의 가격상승을 억제함으로써 공업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그것은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할 경우에 지출될 외화를 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으로 工業化에 크게 寄與하였다.

둘째로 농업발전에 따라 農業資本이 蓄積되었다. 농업잉여는 일차적으로는 농업에 再投資되었지만 농업 이외의 부문으로도 들어갔다. 영국에서 地主資本이 석탄, 광산, 제철, 교통(도로, 운하, 철도), 도시건설부문으로 투입되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였다. 日本에서는 지주자본이 철도, 금융, 지방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는 조세수단을 통하여 農業剩餘를 工業部門으로 적극적으로 이전하였다. 농촌에 대한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부는 농촌으로부터의 조세수입을 보조금 명목으로 공업부문으로 이전하였다. 일본의 경우 공업화 초기에 필요한 資金調達은 부분적으로는 농촌의 부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셋째로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보다 작은 노동력으로 많은 인구부양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非農業人口의 增大를 가능하게 하였다. 영국의 경우 인클로우저에 의해서 공업노동자가 대량으로 창출되었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대해서 근래의 연구는 비판적이다. 즉 인클로우저는 오히려 소농을 증가시켰으며 產業革命期의 노동력이 농촌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클로우저가 소농에게 큰 희생을 주고 農民分解를 촉진시켰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인클로우저가 즉시적으로 농민을 추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傳統的・共同體的 農業制度를 무너뜨려 농민의 社會的, 地域的 可動性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들을 언제든지 工業勞動者化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농민분해는 진전되지 못하고 농민은 토지를 세분화하면서까지 농업에 집착함으로써 공업노동자로의 전환이 진전되지 못하였다. 인구성장을도 낮았고 19세기 후반기에는 오히려 정체적이었다. 이 면에서 프랑스 농업은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진전에 적극

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日本에 있어서는 농민분해에 의해서 창출된 無產農民은 바로 도시공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작농화하여 농촌에 머물렀다. 공업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를 대량으로 흡수할 만한 힘이 없는 단계에서 농민 가족의 일부가 家計 보충을 위하여 공업노동을 하는 ‘出稼型’ 勞動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低賃金은 아직 기술수준이 낮은 일본공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주었으며, 그들은 불경기시에는 농촌으로 회귀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기적 機能을 수행하였다.

넷째로 농업발전은 농업소득을 중대시킴으로써 工業製品에 대한 需要增大的 요인이 되었다. 영국의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래 외국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내시장의 안정적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기반으로 농업발전이 주목되고 있다. 農業所得의 上昇에 뒷받침된 지주와 차지농의 농업투자의 확대가 工產品需要를 擴大시켰고, 곡물생산의 확대에 따른 곡물가격의 하락으로 실질소득이 상승하여 중산층 및 하층의 구매력이 증대하여 國內市場이 擴大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18세기 전반기에 있어서의 영국 공업의 착실한 성장은 이와 같은 국내시장의 확대에 의해서 뒷받침된 것이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영국과 같은 두드러진 정도는 아니었으나 소농체제하에서 전실한 國內市場의 기반이 形成되었다. 고율지대에 의해서 농가소득이 낮았고 가족의 일부를 ‘出稼勞動’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日本 농촌은 국내시장 확대의 유효한 원천이 되지는 못하였다. 농촌의 과잉인구와 저소득에 기반을 둔 低賃金으로 國內市場은 협소하였으며 그 위에서의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은 外國市場에의 依存度를 높게 하였다.

#### 4. 맷 는 말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근대화·공업화과정에서 農業의 近代的 變化, 發展이 가지는 의의는 큰 것이었다. 농업변화의 방향은 그 나라의 사회근대화과정에 일정한 특징을 부여하였고 농업발전은 나라에 따라 편차를 나타내면서도 그 나라의 工業化過程에서 중요한役割을 수행하였다.

근대화·공업화가 진전되면서 農業의 社會經濟的 地位는 저하하였다. 앞에서 고찰한 영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하여 자본주의 공업국에서는 나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구와 소득구성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比重은 크게 떨어졌다. 그만큼 경제성장에 대한 農業의 役割도 저하하였다. 그러나 그 상대적 지위가 저하하였다고 해서 자본주의 공업국에서 농업이 정책적으로 무시되고 쇠퇴한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자유무역체제하에서 1870

년대 이후 식량공급을 결정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農業保護를 위하여 차지권의 강화와 자작농창출정책이 추진되었으며 1930년대와 제2차대전 이후에는 保護關稅와 二重價格制가 導入되면서 농업의 보호·진흥정책이 추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의 보호관세에의 복귀와 協同組合運動을 통해서 농업보호가 추구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제2차대전후 농지개혁에 의한 자작농체제의 확립과 함께 이중곡가제의 도입으로 농업이 보호되었다. 이들 자본주의 諸國의 농업은 각종 보호·진흥정책에 뒷받침되어 自作農的·小經營的 기반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절약적 機械化와 科學的 영농방법을 도입하면서 生產性向上을 이루하였다. 1950년대 이후 프랑스는 歐美資本主義諸國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의 실적을 올렸으며 日本은 高度成長을 이루하였다는 사실은 그 농업적 기반과의 관련에서 주목된다.

農業의 근대적 발전은 社會近代化·工業化過程에서 歷史的으로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발전도상국의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선진공업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 880-6364  
 팩시 : (02) 888-4454

### 參 考 文 獻

- 金容德(1989) :『明治維新의 土地稅制改革』.
- 金宗炫(1977) :『英國產業革命研究』.
- (1991) :『近代日本經濟史』.
- 南亮進(1991) :『日本の 經濟發展』, 鄭英一(譯).
- 中村哲(1989) :“近代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地主制의 性格과 類型”, 安秉直·李大根·中村哲·梶村秀樹(編), 『近代朝鮮의 經濟構造』.
- 高橋幸八郎 編(1963) :『土地所有の比較史的研究』.
- 大内力(1960) :『農業史』.
- 大川一司(1962) :『日本經濟分析—成長と構造—』.
- ルフエーブル, G(1956) :『フランス革命と農民』, 柴田三千雄(譯).
- 中村正則(1979) :『近代日本地主制史研究』.

中村哲(1990)：“近代世界における農業經營、土地所有と土地改革”(1)(2)(3)，京都大學經濟學會『經濟論叢』143. 1~5.

湯村武人(1967)：『フランス近代農業の構造』。

Aston, T.H., and C.H.E. Philpin ed. (1985) : *The Brenner Debate: Agrarian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re-Industrial Europe*.

Bairoch, P. (1973) : “Agriculture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1700~1914,” in C.M. Cipolla (ed.), *Fontana Economic History of Europe: 3. The Industrial Revolution*.

Bloch, M. (1966) : *French Rural History: An Essay on Its Basic Characteristics*, tran. by J. Sondheimer.

Cameron, S. ed. (1970) : *Essays in French Economic History*.

Chambers, J.D., and G.E. Mingay (1966) : *The Agricultural Revolution 1750~1880*.

Clapham, T.H. (1936) : *The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and Germany, 1815~1914*.

Jones, E.L. (1974) : *Agriculture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_\_\_\_\_ ed. (1967) : *Agriculture and Economic Growth in England 1650~1815*.

Postan, M.M. (1962) : “Agricultural Problem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Light of European Agrarian History.”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conomic History, AIX-en-Provence.

Slicher Van Bath, B.H. (1963) : *The Agrarian History of Western Europe, A.D. 500~1850*.

Soboul A. (1956) : “The French Rural Community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Past and Present*, 10, Nov.

Tawney, R.H. (1912) : *The Agrarian Problems in the Sixteenth Century*.